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471호

1974. 12. 3.

# 시 보

차 례

## ◎ 규 칙

- 제 1418 호 : 광고물동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 3
- 제 1419 호 : 서울특별시운수사업조직 체계적규칙..... 4
- 제 1420 호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4
- 제 1421 호 :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5
- 제 1422 호 :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6
- 제 1423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승차권위탁판매규칙..... 10
- 제 1424 호 : 서울특별시공장등록시행규칙 폐지규칙..... 13

## ◎ 고 시

- 제 175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정유장 )  
변경( 위치변경 ) ..... 13
- 제 177 호 : 반도 및 금문도 투쟁가구 경시지구구역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 14
- 제 17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 실시계획인가 .....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179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15
◎ 공 고	
제 248 호 : 환지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6
제 251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16
◎ 사 명	18

**규 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418 호

광고물단속법시행  
규칙중개정규칙

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 1 항중 "별표 1 내지 별표 12" 를 "별표 1 내지 별표 14" 로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 등 의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지하철역광고물

표시위치	규격	색채	자료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승하차장벽면	세로 1m 이내 가로 1.5m 이내	4 색이 내(사진 인 경우 제외)	1. 아크릴 2. 배운 (잠열식 금지) 3. 슬라이드	1. 평면에 밀착하되 벽면으로부터 1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상호거리는 3m 이상으로 하되 게시 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3. 동일내용 1개 이상 게시금지	허가 180일

별표 14 지하도광고물

표시위치	규격	색채	자료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지하도벽면	세로 1.0m 이내 가로 90cm 이내	1-5 색 (사진 인 경우 제외)	1. 아크릴 2. 슬라이드	1. 벽면에 밀착하되 1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상호거리 10m 이상으로 하되 게시 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3. 동일내용 게시금지	허가 90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직제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419 호

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직제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제 930 호 (70.5.20)

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증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420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부녀과란 제 1 호 내지 제 4 호 중 "권한위임"을 각각 "내부위임"으로 하고, 환경과란 제 1 호 및 제 2 호 중 "구청장및출장소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하며 상정과란중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택행정과란에 제 3 호 및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시민과란중 제 4 호와 시설관리과란중 제 16 호 및 제 17 호를 각각 삭제한다.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 임 기 관	근거및적용법규
상 징 과	3. 가격표시단속 가. 가격 표시 시대참지정 (공고) 이후 개별지정 나. 가격 표시이행에 관한 조사와 감독	권한위임	구청장 및출장소장	동법시행령 제 6 조 상공부고시 제 10432호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 10 조 및 제 13 조
주 택 과	3. 주택 (아파트) 상환금 과징업무 4. 채납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제 24 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1974.12.3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1421 호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부  
과는 그 구역의 부과금액에서 100  
분의 50은 면적의 비례로 하고, 나  
머지 100분의 50은 도로에 접한  
토지길이의 비례로 산정부과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사시행부서는 부담금의 과징  
을 수반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조례제8조의 규  
정제 의한 토지가액조사에 필요  
한 공사종류, 구간, 착순공백전일,

공사비(보상비포함) 및 공사평면  
도면과 공사시행30일전까지 공사  
시행지 관할구청장(출장소장포함.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전호의 통보자료에 의  
하여 공사시행전일까지 토지가액조  
사를 완료하여 조례제9조에 의한  
공사시행공고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전일까지  
토지가액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공사시행공고물 먼저할  
수 있다.

3. 공사시행부서는 공사준공과 동시  
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준공  
사항(준공일정산총공사비등)을 관  
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제8조 및 제10조의 토지  
시가조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제6조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공원  
숙지지역, 방호지역, 체계발전지역 및  
도시계획선에 적용된 토지로서 부  
담금을 부과함이 급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제 7 조 제 3 호를 삭제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권한위임) 시장은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전부를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2 개구 이상에 걸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착공되어 등록세과세시가표금액에 의거 확정된 토지가액은 이를 한 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준공후에 조사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등록세과세시가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비율을 착공시 토지가액에 가산한 가액을 착공전 토지가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12.3

서울특별시 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22 호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의 위임) 하천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등의 가액결정과 부과 및 징수등 일체의 업무는 당해 부담금의 부과대상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과대상 구역이 2 개이상의 구에 걸쳐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 3 조 (부과대상구역의 결정) ① 부담금 부과대상구역의 결정은 당해 하천공사를 행하는 시공청(이하 "시공청"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준용하천의 하천구역내의 토지로서 체내지로 되는 토지
- 2. 공사시행전 5년 이내에 1회이상 침수되었던 구역으로서 침수가 방지되는 지역

3. 기타 당해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는 지역

② 제 4 조 (공사공고 및 통보) ① 시공청  
은 부담금의 과징을 수반하는 하  
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늦  
어도 착공 30 일 전까지 조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가액조사에 필요한 공사종류, 구간,  
착공공역정일, 공사에 소요될 비용  
및 관제도면을 첨부 관할구청장  
(출장소장포함 이하 같다)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통보자료에 의  
하여 공사시행전일까지 토지가액조  
사를 완료하여 조례 제 6 조에 의한  
공사시행공고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전일까지  
토지가액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공사시행공고를 먼저  
할 수 있다.

③ 시공청은 제 1 항의 공사를 준공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

고하고 준공사항(준공일, 적산총공  
사비등)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 5 조 (토지등의 가액기준) ①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  
다)의 가액을 조사할때의 그 가액  
의 기준은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  
액에 의한다. 다만, 토지등의 가액  
을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액에 의  
하여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시의 토지등의 가액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사 부과하여야 한다.

③ 타법행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부담  
금 부과대상토지등의 준공후가액(부  
과시의 기준가액)을 조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가액으  
로 한다.

제 6 조 (부과대상자) 조례 제 2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인 토지  
및 가옥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부의무

자라고 기타는 설계의 소유자로 한다.

제 7 조 ( 자연상승치 ) 조례제 2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시가의 자연상승치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일반 도매물가상승률로 한다.

제 8 조 ( 공사비의 범위 ) 조례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 1 . 하천공사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 2 . 하천공사에 요하는 비용
- 3 .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또는 공작물이나 지장이 되는 활건의 매수나 이전 및 그 보상에 요하는 비용
- 4 . 하천법제 43 조 또는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중 하천공사에 의한 비용
- 5 . 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제 9 조 ( 부담금의 감면 ) ① 조례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이를 전부 면제한다.

- 1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등

- 2 . 서울특별시외 토지등
- 3 . 부담금산정가액의 100 원 미만인 경우

② 조례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액을 징수한다.

제 10 조 ( 납부기한 ) 조례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종지를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로 한다.

제 11 조 ( 분할납부 ) ① 조례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납부기한 10 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분할납부여부의 통지를 납부기한 5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제 32 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 비치대장 ) 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사항을 별지제 1 호서식에 의한 부과대장과 별지제 2 호서식에 의한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 보고 ) 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상황을 매익월 5 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호서식

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대장

번호	위 치	지 번	종 별	수 량	소 유 자		공사시행공 고당시가액
					주 소	성 명	

공사준공 후 가액	자연상승치	현재한이익	부과율	부과액	납부기한	감 면 사 한		비 고
						사 유	금 액	

별지 2 호서식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대장

번호	위 치	지 번	종 별	수 량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성 명

납부기한	납부금액	징수월일	징수금액	비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승차권 위탁판매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12.3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인

◎서울특별시규칙제1423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차권위탁판매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하철승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 1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승차권의 위탁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위탁판매인의 지정 ) ①지하철승차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하는자 (이하 "위탁판매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별지서식) 2부
- 2. 위탁판매인 인감증명서 2부

제 3 조 ( 지정기간 ) ①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위탁판매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없이 계속 지정을 할 수 있다.

제 4 조 ( 지정의 대상 ) ①조제 8 조에 규정한 학교의 대표자

②기타 본부장이 위탁판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조 ( 보증금의 예치 ) ①위탁판매인은 월판매예정액의 5 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하철본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제 8 조제 2 호에서 규정한 학교와 기타 본부장이 보증금 예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 승차권판매의 종류 ) 위탁판매인이 판매할 수 있는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승차권
- 2. 회수승차권

제 7 조 ( 위탁판매계약 체결 ) 제 2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위탁판매인은 승차권위탁판매업무에 관하여 본부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8 조 ( 위탁판매인의 업무 ) ① 위  
탁판매인은 승차권의 판매와 이에  
수반하는 승차변경등의 업무를 위  
급한다.

② 승차권 판매의 수입금은 본부  
장이 지칭하는 역 (이하 "관리역"  
이라 한다) 에 승차변경등의 업무  
를 위급한다.

③ 기차만료의 승차권은 징표하여  
관리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업무와 승차권보관  
기타 승차권 취급에 대하여는 본  
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 위탁판매수수료 ) 조 제 10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탁판매  
수수료는 위탁판매 총액의 5/100  
로 하고, 전조 제 2항의 판매금액  
납부시에 지불한다.

제 10 조 ( 징표류 기타 용품등의 지급 )  
본부장은 제 8 조의 업무처리액 필  
요한 징표류 기타 용품등을 위탁  
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 지정의 변경 및 취소 )

① 위탁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명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도 변경승인을 받  
지 아니할 때.
2. 제 8 조의 제 2항 내지 제 4항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제각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제 12 조 ( 지정취소후의 처리 ) 본부장

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  
위탁판매인 지칭을 취소하였을 때  
에는 승차권 기타를 회수하고 승  
차권 판매에 대한 정산불 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충  
금에서 충당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 13 조 ( 권한위임 ) 시장은 조 제 102

의 2의 규정에 의한 승차권  
위탁판매에 관한 사무일체를 본부  
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실 : 지하철본부장 귀하

제 목 : 지하철승차권 위탁발매신청

지하철 승차권 위탁발매를 지정받고자 지하철 승차권 위탁발매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2. 발매 장소

3. 1월 발매예정수량 및 금액

구 별	1월 발매 예정 수량	금 액	비 고

- 첨 부 : 1. 법인등기부 등본 2부.  
 2. 위탁발매제회서 2부  
 3. 인감증명서 2부

서울특별시 공장등록시행규칙 제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424호

서울특별시공장등록  
시행규칙제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제 991호 (1970.5.20)

서울특별시공장등록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75호

서울도시계획시설 ( 화물자동  
차장류장 ) 변경 ( 위치변경 )

가. 변경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창	화물자동차장류장 ( 동부 )	동대문구상봉동 164 외 11 필지	7,928㎡ ( 2,402.2 강 )	상업지역
변 경	.	동대문구상봉동 79- 7 외 2 필지	8,853.9㎡ ( 2,483 평 )	.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동대문  
구청에 보관함.

1. 서울특별시고시제 351호 ( 73.9.7 )

로 시설결정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 화물자동차장류장 ) 을  
다음과 같이 변경 ( 위치변경 )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 ( 73.  
4.4 ) 의 규함에 따라 이를 고시한  
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추하여 토지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2. 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77 호

반도및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 구역변경결정  
에 따른 지적고시

1. 건설부고시 제 381 호 (74.11.27) 로 반도 및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구역변경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을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4. 12. 5

서울특별시장

가. 반도 및 금문도 특정가구정비지구 변경결정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1.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중구소공동, 을지로 1가, 남대문 로 2가	35,000	(증) 2,800	37,800
2. 금문도 특정 가구정비지구	중구소공동, 을지로 1가, 남대문 로 2가	22,000	(감) 2,800	19,200

※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7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86 호 (62.12.30) 로 시설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4. 12. 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 2 동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창신 2 동 진입로 확장공사
- 3. 사업규모 : 가. 도로폭 8 미터  
나. 연 장 216 미터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74.12.1-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7. 토지 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 고시 제 186 호 ( 62.12.30 ) 로 시설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

획법제 25 조와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 73.6.4 )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설국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4.12.6

서울특별시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원서동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계동-원서동간 도로 확장공사
- 3. 사업규모 : 가. 도로폭 8 미터  
나. 연 장 200 미터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74.12.1-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7. 토지 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 3. 사업규모 : 가. 도로폭 8 미터

나. 연 장 200 미터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74.12.1-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7. 토지 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48 호

한지에 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 천호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한지에 정지종 일부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와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귀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및 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와 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에정지물 변경자 정하였기 공고한다.
2. 한지계획지 변경지정조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변도서류로 송달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12.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5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24 호 (74.8.30)로 고시된 지검진입로 확장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배정부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2.6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서대문구서소문동, 중구 태평로 2 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지검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도시계획도로: L= 8

<p>4. 사건과 시행자: 서울특별시청</p> <p>5.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 지 조서</p> <p>6. 사업확수및준공: 74.12.1-12.31</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3항의 관계인주소성명: 별첨 조서</p>
<p>토 지 조 서</p>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상 명	
1	서대문구 서소문동	1-1	축	56.6	1-1	축	42.1	서소문 1-1	최 남 근	
2	"	1-3	"	5.8	1-6	"	0.3	" 1-3	신 풍 건설	
3	"	1-7	"		1-7	"	0.1	" 1-3	"	
4	"	1-1	"	1.9	1-3	"	0.1	" 1-4	제 일 화 계	
5	"	2-1	"	50.0	2-2	"	4.3	" 2	"	
6	"	5-1	"	51.0	5-2	"	11.7	" 4	박재덕 4.6 인	
7	중구 태평로2가	367	"	43.0	367-2	"	23.9	중구태평로 2 가 367	중앙동업(株)	
8	"	366	"	75.0	366-2	"	14.8	종로구관훈동 151	사단법인새우회	
9	"	372	"	16.0	372-2	"	10.1	서대문구서소문동 12-1	삼전개발(株)	
10	"	373	"	25.0	373-1	"	11.8	"	"	
11	"	371	"	13.0	371-1	"	9.8	"	"	
12	"	369	"	11.0	369-2	"	5.3	"	"	
13	"	370	"	12.0	370-1	"	11.5	"	"	
14	"	362	"	24.0	362-2	"	1.7	종로구원남동 188-2	정 흥 원	

사 령

◎ 1974.11.30

공무원교육원교 지방행정  
수부교학과인형제 사 부관

임 병 택

행정 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교학과 전형제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 수 부 사 부관

김 착 신

행정 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 수 부 사 부관

박 과 수

행정 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 수 부 사 부관

박 광 욱

행정 사무관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 수 부 사 부관

이 영 재

행정 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행정사무관 교명도

사회과 행정사무관 김영두

성북구 행정사무관 장재덕

시민봉사실 행정사무관

기획관리관실 행정사무관

통제과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발을명함.

1974.11.30.

대 통 령

◎ 1974.12.1

대방부녀 지방보건 배 글 준

보호지도소 기사보 한 근 숙

대방부녀 지방간호 이 선 과

보호지도소 기사보

남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오류부녀 지방간호 이 선 과

보호지도소 기원보시보

남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변 홍 균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박 근

수도사업소 서 기 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이 안 구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수도사업소	구 지방행정 서서기	박종술	도봉구	지방행정 서서기	오동관
성북구	군무를 명함.		중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성동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표의명	성동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박승근
서대문구	군무를 명함.		중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성동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김경숙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	이숙석
동대문구	군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김태숙	성동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주준걸
동대문구	군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최석채	마포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최서봉
영등포구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용산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이승현	마포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안상봉
은평할장소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용산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장홍주	관악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이만길
관악구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관악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이근업	동대문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최준양
관악구	군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관악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이교용	마포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윤정업
마포구	군무를 명함.		관악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도봉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서기	정은태	서대문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이장울
중구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마포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이명순	마포구	구 지방행정 서서기	김광수
종로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남부병원 지방행정 서기보	인경환	오류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주	백명숙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제훈	대방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주사보	배한성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주	박광수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서기	유성열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동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주	김상규	오류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서기보	서원섭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동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주	박진기	대방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주	신석균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병운	대방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서기	강선실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서기보	장성진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서기	박종화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태수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서기	안병찬
중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동인담당관실 지방행정 주	유기로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사무관	박영근
운수 2과 근무를 명함.		남부부녀보호지도소장에 포함.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주	임주용	대방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사무관	송영화
남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남부부녀보호지도소장에 포함.	
오류부녀 지방행정 보호지도소 주사보	이은숙		
남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p>◎1974.12.3 조경과 지방건축 (조경2계장) 기과 시보</p>	<p>농지과 보호계장 직무내리물 명함.</p>
<p>변영진 고층건물전단본부 파견근무 (75.1.30까지)를 명함.</p>	<p>◎1974.12.5 보건행정과 지방보건 (직위해제중) 기 사 장수순 부직을 명함.</p>
<p>◎1974.12.4 양도장(장장) 지방농림 기 과 피상진</p>	<p>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건축 기 사보 이점정</p>
<p>조경과 조경2계장에 포함. 조경과 지방농림 기 과 이회봉</p>	<p>관악구 지방건축 기 사보 이달업</p>
<p>농지과 사방조림계장에 포함. 농지과 지방농림 (보호계장) 기 과 윤태경</p>	<p>고층건물전단본부 파견근무 (75.1.30까지)를 명함. 도봉구 지방건축 기 사보 이찬수</p>
<p>공원과 공원관리계장에 포함. 농지과(사방 조림계장)기과 내 지방농림 사 김실</p>	<p>관악구 지방건축 기 사보 김용래</p>
<p>양묘장 장장적무내리물 명함. 공원관리 지방농림 (공원관리) 기 과 김수원</p>	<p>고층건물전단본부 파견근무를 해제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시 기 보 최상호</p>
<p>김수원</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건물을 명함.</p>

서울특별시